

이미경의원 의정자료집 |

SAd.a.1

戰時 軍성노예 문제에 관한
UN 인권위원회 특별보고서

(1996.4.제52차 회의)

국회의원 이 미 경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105호
TEL.788-2014, FAX.788-3105, 천리안ID.lmk2014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Ms. Radhika Coomaraswamy)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B12-1	34	

이미경의원 의정자료집 |

戰時 軍성노예 문제에 관한
UN 인권위원회 특별보고서

(1996. 4. 제52차 회의)

라디가 쿠마라스와미
(Ms. Radhika Coomaraswamy)

자료집을 발간하며

이 보고서는 1994년 3월 4일 「UN 인권위원회」 제 50회 회기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 결과에 대한 조사를 위해 3년간의 임기로 임명된 스리랑카의 여성폭력전문 법률학자 Ms. Radhika Coomaraswamy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Ms. Radhika Coomaraswamy는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후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조사를 위임받아 관련 국가들을 방문, 현지조사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1996년 4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同 위원회의 제52차 회의에서 정식 보고서로 채택되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UN 인권위원회」에서 정식 채택됨으로서 일본군‘위안부’문제의 반인륜적 잔혹성이 전세계에 알려졌으며, 일본정부의 국제법적 책임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연대를 강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노력에 뜻을 함께하는 많은 분들에게 이 보고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국회 도서관 해외자료관’의 도움으로全文을 번역하였으며, 다만 번역과정에서 부록(주요 인물 및 기관 명단)은 제외시켰음을 밝혀 듭니다.

1997. 2

국회의원 이 미 경

목 차

서 문	9
I. 정 의	11
II. 역사적 배경	13
A. 전반적 배경	
B. 징 집	
C. 위안소 설치	
III. 특별보고관의 작업방법 및 활동	27
IV. 증 언	29
V.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입장	38
VI.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	42
VII. 일본정부의 입장: 법적 책임	46
VIII. 일본정부의 입장: 도의적 책임	58
IX. 권고사항	63
A. 국가적 차원	
B. 국제적 차원	
〈부록〉 보고서 원문	71

전시 軍 성노예 문제에 관한 UN 인권위 특별보고서

서 문

1. 여성에 대한 폭력실태 조사 임무를 부여받은 특별보고관(역주: 이하 “본인”으로 칭함)은 대한민국 및 일본정부의 초청으로 1995년 7월 18일에서 22일에 걸쳐 서울을, 같은 해 7월 22일에서 27일에 걸쳐 동경을 방문하여 전시의 군 성노예 문제를 여성에 가해진 폭력이라는 좀 더 넓은 틀 안에서 원인과 결과적 측면을 포함하여 심도있게 연구하고자 노력하였다. 역시 같은 사안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역주: 이하 “북한”으로 약칭함)의 초청을 받아 1995년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평양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연결 비행기편의 연착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본인은 1995년 7월 25일자 편지에서 평양 방문이 무산된 데 대해 심심한 사과와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하였다.
2. 같은 편지를 통해 본인은 김영남 당시 북한 외교부 부장에게, 1995년 7월 15일에서 18일에 걸쳐 평양을 방문했던 인권센터 대표단이 본인을 대신하여 수집한 후 본인에게 전해 준 모든 정보, 자료, 기록을 전적으로 신뢰함을 알리고자 하였다. 또한 본인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의사를 전하였다. 본인은 북한정부가 1995년 8월 15일자 편지에서 인권센터 대표들에게 제공된 정보, 자료, 기록이 본인의 보고서 작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해 온 데 대해 북한 당국에 깊은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3. 본인은 또한 한국 및 일본정부의 협조 및 도움에 감사를 표하는 바, 양국 정부는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자세로 본인으로 하여금 이 분야의 관련 인물들과 대화를 나누고, 인권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할 정보 및 자료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4. 방문을 통해 이루어졌던 정부기관 및 민간기구 대표들과의 수준 높은 토론이나, 전쟁 당시 일본군의 성노예였던 피해자 여성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본인은 피해자들의 요구조건과 해당국 정부의 입장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3개국 방문은 또한 아직 미해결인 채로 남아 있는 사안이 무엇이며, 가까운 장래에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본인의 이해를 돋는 데 큰 몫을 하였다.

5. 본인은 이 보고서의 주제에 관한 논의가 한반도의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케이스의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재정 및 시간상의 제약으로 모든 관련국가의 생존 피해자들을 방문하지 못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I. 정 의

6. 본인은 이 보고서 작성을 시작함에 있어, 전시에 군대에 의해 그리고 혹은 군대를 위해, 성적 봉사를 강요받았던 여성들의 경우를 군 성노예 제도로 간주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두고자 한다.

7. 이와 관련하여 일본정부가 1926년의 「노예협정」 제1조제(1)항에 의거하여 “소유권에 따르는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가 어떤 대상에게 행사되어질 때 그 대상이 처하게 되는 지위 또는 상태”로 정의되는 “노예제도”라는 용어를 현행 국제법하에서 “위안부” 문제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본인은 잘 알고 있다.

8. 그러나 본인은 “위안부”的 임무가 관련 국제인권단체 및 제도에 의해 채택된 접근방식에 따라 성노예 및 유사노예 상태의 명백한 사례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수용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방지 및 보호 소위원회」가 1993년 8월 15일의 1993/24 결의안에서, 전시에 자행된 여성의 성적 착취 및 기타 형태의 노동력 착취와 관련하여 「현대형 노예제도 실무그룹」이 제출한 자료를 주목하여 전시에 있었던 조직적인 강간, 성노예제도 및 유사노예 임무들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하도록同 소위원회의 한 전문위원에게 위임했었던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이 소위원회는 이 밖에도 그 연구를 준비하는 데 있어, “위안부”를 포함한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에게 원상회복, 보상 및 복권의 권리와 관련하여 본인에게 제출된 바 있었던 자료를 참고하도록 그 위원에게 요청하였다.

9. 아울러 본인은 「현대형 노예제도 실무그룹」이 제20차 회기에서 일
본정부가 발행한 “2차대전중 여성의 성노예 실태” 관련자료에 대해 환영
의 뜻을 표하면서, 일본의 행정적 심사회의 설치를 통해 “유사노예 상태
의 처우” 문제를 해결하도록 건의했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자 한다.

10. 마지막으로 용어선택에 있어 본인은 앞서 언급한 「현대형 노예제
도실무그룹」 회원들이나 민간기구 그리고 학계의 대표들에 의해 수용되
는 견해 즉, “위안부”라는 용어가 피해자들이 전시에 강제매춘이나 성적
압력 및 학대를 감내해야 했던 고통,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윤간이나 심
각한 육체적 학대와 같은 고통을 조금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에
각각으로 동감한다. 따라서 본인은 “군 성노예”라는 용어가 훨씬 더 정
확하며 적절하다고 확신하는 바이다.

II. 역사적 배경

A. 전반적 배경

11. 전쟁지역의 일본군을 위한 매춘부 공급을 담당한 “위안소” 시설은
1932년 중일분쟁이 일어나면서 상해에서 이미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이
는 소위 “위안부”란 명칭의 사용이 확대되어 공식적인 현상으로 자리잡
기 약 10년 전의 일이었다. 이 제도는 의심의 여지 없이 제2차 세계대
전이 막을 내릴 때까지 일본 지배하에 있던 동아시아의 모든 지역에서
시행되었다. 최초의 종군 성노예들은 일본 큐슈지방에서 징집된 한국인
여성들로, 이들은 한 일본군 지휘관의 요청에 따라 나가사키현 지사의
지시로 보내지게 되었다. 위안소의 설치배경으로 내세워진 공식적 이유
는 매춘의 제도화를 통해 일본군 주둔지역에서의 강간사고를 줄인다는
것이었다.

12. 1937년 일본제국 육군이 남경을 점령했을 당시, 일본당국은 군의
기강 및 사기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1932년 처음
도입되었던 위안소 설치계획이 부활하게 되었다. 상해 특별지부는 군을
대상으로 한 매춘서비스에 필요한 여성들을 가능한 한 많이 구하기 위해
서 1937년 말까지 무역업계와의 관계를 이용하였다.

13. 여러 명의 여성들이 남경과 상해 중간에 위치한 위안소에 고용되었
으며 이 위안소는 군이 직접 운영하였다. 이 위안소는 후에 생겨난 위
안소들의 본보기가 되었고, 이 위안소의 사진과 이용규칙들이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이 보다 확산되면서 위안소의 환경이 더욱 안정되자 위안소의 군적영체제는 더 이상 계속되지 않았다. 위안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민간인이 많이 생겨났으며 그들은 위안소 내부 운영사정까지도 알고자 하였다. 그들은 또한 군에 의해서準군사적 신분과 계급을 부여받기도 하였다. 군은 여전히 위안소의 이동과 보건문제 및 총괄적인 감독을 책임졌다.

14. 전쟁이 계속되면서 동아시아 각 지역에 주둔하게 된 일본군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군 성노예의 수요도 증가하게 되자 새로운 징집방법이 개발되었다. 사기와 무력이 동원된 새로운 방법은 여러 동아시아 지역,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에서 많이 쓰여졌다. 많은 한국출신 “위안부”여성들 의 증언에서 당시 위압적이고도 속임수에 가득 찬 모집방법이 얼마나 횡행했는지를 알 수 있다. 상당수의 희생자들(대부분 한국인)이 위안부 강제징집을 책임졌던 지역 협력업자나 대리인들에 의해 속임을 당했던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¹⁾

15. 1932년에 통과되었으나 종전 수년 전까지 완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던 일본정부의 「국가총동원법」이 강화됨에 따라, 남녀를 가리지 않고 전쟁에 공헌하도록 요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자원봉사대(挺身隊)”가 조직되었으며, 이는 표면상으로는 공장에서 작업을 하거나 기타 전쟁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여성들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군은 이를 빙자하여 많은 여성들을 군 성노예로 끌고 갔으며, 이렇게 해서 “정신대”와 매춘의 관계는 곧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6. 결국 일본인들은 점차 늘어나는 군대에서의 여성 수요를 폭력과 노골적인 강압의 수단을 통해 조달할 수 밖에 없었다. 많은 수의 희생자들이 증언한 바에 의하면, 딸의 연행을 필사적으로 막는 가족들에게 폭행이 가해졌으며, 어떤 경우에는 강제로 끌려가기 전 부모가 보는 앞에서 강간을 당하기도 하였다. 여복실 피해자의 사례를 보면, 그녀는 다른 많은 소녀들처럼 집에서 잡혀 갔는데 이 때 딸의 징집에 반항했다는 이유로 그녀의 아버지에게 폭행이 가해졌다.²⁾

17. 위안소 설치의 입지 조건은 전쟁 진행상황에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위안소는 일본군이 주둔했던 곳이면 어디에나 설치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한 가운데 “위안부”들이 일본 본토에까지 생겨나게 되었는데, 당시 일본에는 공창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몇 군데의 위안소가 설치되었다.

18. 여러 경로의 자료를 통해 보건대 위안소는 중국, 대만, 보르네오, 필리핀, 태평양군도, 싱가포르, 말레이반도, 베마(역주: 현 미얀마)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신이 소속되어 있던 당시의 위안소를 기억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위안소 체제 운영에 관여했던 친척 혹은 주위사람을 알고 있는 다양한 층의 증인들이 남긴 증언이 기록되어 있다.³⁾

19. 일본에 점령당했던 여러 지역에는 다양했던 위안소 규칙들과 각색의 상황에서 위안부들 자신이 찍혀 있기도 한 사진들이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다. 징집방법을 증명할만한 기록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반면, 위안소의 실질적 운영 실태는 현재까지 남아 있는 광범위한 당시 기록들

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 일본군은 교묘하게도 자신들의 매춘제도에 관해 유홍의 기분이 느껴지게 하려는 의도하에 세부사항을 기록해 놓고 있다. 이 기록에는 상해, 오키나와, 기타 일본 및 중국내 지역, 그리고 필리핀에 설치되었던 위안소들의 규칙, 특히 위생규칙, 서비스시간, 규칙, 위안부에 대한 요금지불, 알콜과 무기반입 금지 등의 자세한 규칙들이 포함되어 있다.

20. 이 규칙들은 전쟁이 남긴 기록들 가운데서 일본군이 저지른 범죄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다. 그것들은 일본군이 어느 정도까지 위안소 운영에 직접적인 책임을 안고 있는지, 또한 군이 위안소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위안소가 얼마나 합법적으로 제도화되었던 시설인가를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다. 일본군은 “위안부”들이 정당하게 대우받은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알콜과 무기반입 금지, 서비스시간 염수, 비교적 후한 요금, 그 밖에 예의가 갖추어지고 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는 느낌이 들어 보이도록 시도된 규정들은 실제 있었던 잔혹성 및 야만성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이는 많은 여성들이 종종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상처입는 상황하에서 매춘을 강요받았던 군 성노예제도의 극에 달 한 비인도성을 더 잘 드러내 보여줄 뿐이다.

한 비인도성을 더 잘 드리자.
21. 종전이 되었을 때 많은 수의 위안부들이 퇴각하는 일본군에 의해 살해되거나 혹은 유기되어 결국 사망했으므로 구제된 위안부들은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미크로네시아에서는 하룻밤새 70명의 위안부가 일본군에 의해 살해되었는데, 이는 일본군이 만일 미군의 포로가 될 경우 위안부들의 존재가 자신들을 곤혹스럽게 만들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⁴⁾

22. 전방주둔군 기지에 있던 많은 피해자들은 병사들과 함께 자살을 강요받는 등, 군사작전에 동참할 것이 강요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개별적으로 방치되었는데, 지역적으로 자신들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였을 뿐 아니라, “적군”의 수중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게 될지를 예측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많은 수의 위안부들은 자신들의 현 위치 도 몰랐으며 무일푼이거나 극히 소액의 금품을 지니고 있었다. 증언에 따르면, 자신들이 위안소에서 “벌어들인” 돈을 실제로 받아 쥐어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 마닐라에서의 경우 처럼 도망친 여성들 가운데 많은 수가 탈진한 상태에서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었다.

B. 징집

B. 성급

23. 2차대전 당시의 군 성노예 징집에 관해 보고서를 쓰면서 가장 문제 가 되었던 부분은 실질적 징집 과정에 관련된 공식 문서가 남아 있지 않거나 공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었다. “위안부” 징집과 관련한 거의 모든 증거는 피해자들 자신의 구두증언에서 얻어졌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의 증언을 단순한 일화로 치부해 버리거나, 심지어 일본정부가 사설 매춘제도의 운영에 연루된 것처럼 꾸며댄 것으로 밖에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위안부들이 징집 방법에 대해 한결같이 일치되는 증언을 하는 것에서 미 루어 볼 때 군부와 정부가 여러 차원에서 명백히 관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다. 그토록 많은 여성들이 관의 개입사실을 나 타내 주는 유사한 이야기를 일부러 꾸며낸다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24. 1932년 상해에서 일본정부의 직접 관리하에 처음으로 위안소가 설치되었으며, 여기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남아 있다. 당시 상해 주둔군 지휘관이었던 오까무라 야스지(岡村寧次) 육군중장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당시 자신이 군대를 위한 위안소 설치를 제안했다고 고백하고 있다.⁵⁾ 그 때까지 일본군에 의한 강간사건 발생률은 무척 높았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내 나가사키현 지사의 도움으로 한국인 거주지역으로부터 한국인 여성들을 징집해 오게 되었다. 그녀들이 일본땅으로부터 보내졌다 사실에서, 군부 뿐만 아니라 후에 강제모집에 있어 군에 협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현의 지사들 및 경찰을 장악하고 있던 일본 내무성(역주: 현 차치성)이 여기에 개입되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25. 1937년, 남경에서의 강간사건을 계기로 일본정부는 모종의 규율이 정해져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위안부조직”을 부활시켰다. 북부 큐슈 지역에 대리인이 파견되었고, 매춘업소 여성들의 자발적 지원이 여의치 않자 그 지역의 처녀들에게 고소득의 일자리를 허위로 제공하는 방법을 다시 사용하게 되었다. 이때 이들이 내세운 일거리는 군부대 내의 요리나 빨래일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상해와 남경의 중간지역에 위치한 위안소에서 군 성노예로 부려졌으며, 이 위안소는 후에 세워진 위안소들의 원형이 되었다.⁶⁾

26. 전쟁 후기에는 대부분의 위안소 운영권이 군의 대리인에 의해서 권유받은 사람들이나 사설운영권 허가를 신청한 사람들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군이 매춘서비스를 직접 관리한다는 것이 부적절하게 느껴지게 되었고, 민간업자들의 매춘시설이 군인들에게 더욱 “적합”

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그러나 사설업자들이 어느 정도 개입하게 되고, 따라서 위안소 설치의 실제 책임자의 신분이 지역별로 다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집과정에 있어 관리들의 책임은 점차 늘어났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최근까지도 강제성과 허위적 방법이 동원된 징집과정에서의 자신의 역할이나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하기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군 성노예를 징집하는 과정에 대한 정보는 상당부분 피해자 자신의 증언에서 얻어지고 있다.

27.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기서 다루어진 정보는 과거 “위안부”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이며, 이 이야기들은 나름대로 분명한 윤곽을 보여주고 있다. 세 가지 형태의 모집방법이 확인되었는데 첫째, 이미 매춘업에 종사하고 있던 여성들의 자원, 둘째, 높은 소득이 보장되는 식당일이나 군대에서의 취사 및 빨래일을 하는 것처럼 속이는 방법, 셋째, 일본점령하의 국가들에서 대규모로 자행된 노예사냥과도 같은 강제적이고도 폭력적인 납치가 그것이다.⁷⁾

28. 더 많은 위안부들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군대 일을 맡아 하던 사설업자들이나 일본정부에 협력하던 한국인 경찰요원들은 시골마을로 내려가 고소득을 약속하며 처녀들을 유혹하였다. 1942년 이전 수 년 동안은 한국인 경찰이 “여성정신대” 모집에 나섰다. 일본정부도 시인한 이 방법은 징집과정을 공식화한 것으로, 역시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만일 “지원자”로 추천받은 처녀가 나타나지 않으면 현병대 혹은 군경찰이 사유를 조사하였다. 실제로 “여성정신대”는 일본군에게 위와 같은 거짓 구실하에 “전쟁노력에 참여”하도록 지방의 소녀들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한국인 업자와 경찰을 이용하는 기회를 제공했다.⁸⁾

29. 이제껏 동원된 인원보다도 더 많은 여성들이 필요하게 되자 일본군은 자녀의 징집을 막아보려는 가족들을 살해하는 등 공공연히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선회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1938년 통과된 「국가총동원법」이 강화되면서 활성화되었는데, 이 법은 1942년 이후 한국인들의 강제징용에만 적용되었다.⁹⁾ 과거 군 성노예들의 증언을 통해 징집과정에서 폭력과 부정수단이 널리 통용되었다는 증거를 얻을 수 있다. 게다가 당시 특공대원이었던 요시다 세이지(吉田清治)는 자신의 경험을 기록해 놓은 저서를 통해,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조직된 ‘전국노동봉사회’ 밑에서 “위안부”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1,000명의 여성을 차출하는 노예사냥과도 같은 작전에 참여했음을 고백하고 있다.¹⁰⁾

30. 기록에 의하면 관리나 지주계층의 자녀들은 강제징집을 면할 수 있었는데, 이는 이들 계층이 지역주민들을 관리하는 데 유용하였기 때문이었다. 마을에서 불잡혀 온 여성들은 매우 어린 소녀들로서 대부분이 14세에서 18세 정도로, 학교가 이들의 징집에 이용되었다. 현재 군 성노예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윤정옥 교수는 당시 부모님의 선견지명 덕택에 학교에서 징집되는 것을 모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성병과는 거리가 먼 학생연령의 소녀들이 어떻게 징집되었는지를 증언하고 있다.¹¹⁾

31. 나이도 어린데다 순진하기만 한 그녀들은 자신들에게 제공된 좋은 일자리에 대해 전혀 의문을 품지 않았으며, 강제적인 연행에 반항할 수도 없었고, 대부분의 경우 매춘 혹은 성행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다. 그녀들의 취약점과 무기력함은, 바로 그녀들이 신뢰했던 교사, 지역 경찰·관리들이 종종 징집과정에 관여했었다는 점 때문에 더욱 가중되었

다. 게다가 매춘이 갖는 치욕적 성격 때문에 그녀들은 종전이 되기 전에 돌아왔어도 자신들의 경험을 숨겼으며, 따라서 다른 소녀들에게 위험을 알리지도 못하였다. 대부분의 피해자에게는 우선 자신의 끔찍했던 경험을 숨기고 사회에 재합류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였던 것이다.

C. 위안소의 실태

32. 과거 “위안부”들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들이 일본군 병사들을 위해 일해야 했던 환경은 거의 모두가 하나같이 열악하였다. 수용시설 및 전반적인 대우는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었으나, 거의 모든 피해자가 가혹하고 잔인했던 당시의 환경을 증언하고 있다. 위치한 곳에 따라 다르긴 했지만, 위안소는 일본군이 점유한 건물이나 아니면 특별히 “위안부” 거주 목적으로 부대 옆에 지어진 가건물에 설치되었다. 전방에 위치한 위안소 건물은 천막이거나 임시 판자집이 대부분이었다.

33. 위안소 주변에는 대개 철제 가시망이 둘러져 있었으며 보초의 경비와 순찰이 삼엄하였다. “위안부”的 행동은 세밀하게 감시되고 제한되었다. 많은 여성들이 한 번도 병영 밖으로 나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몇몇 피해자들의 경우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병영 밖 출입이 허락되기도 하였고, 다른 몇몇의 경우는 머리를 자르거나 혹은 영화관람을 위해 가끔씩의 외출이 허락되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동의 자유는 명백히 제한되어 있었으며 탈출이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34. 위안소는 보통 1층, 혹은 2층으로 된 건물로 1층에는 식당 및 접수 대가 있었다. 위안부들의 방은 대개 건물 뒤쪽이나 윗층에 있었으며, 각각의 방은 3×5피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좁고 답답한 공간으로, 겨우 침대 하나만 들어갈 수 있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위안부”들은 하루에 60 내지 70명을 상대해야 했다. 몇몇 전방지역에서는 그녀들을 바닥에 깔린 매트리스 위에서 자도록 하는 등, 위안부들은 춥고 더러운 환경에 방치되기도 하였다. 많은 경우 방들은 단지 다다미 혹은 간이 매트로 분리되었는데, 이 칸막이가 바닥에까지 닿아 있지 않아 이웃한 방에서 나는 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었다.

35. 전형적인 위안소의 경우 민간업자가 감독을 맡고 있었으며, 한 명의 일본인 여성, 혹은 몇몇 경우 한 명의 한국인 여성이 위안부들을 보살펴 주고 있었다. 그녀들에 대한 건강검진이 군의관에 의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많은 위안부들의 증언에 따르면 정기검진은 단지 성병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 것에 불과했다. 병사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가혹행위 즉, 담뱃불에 의한 화상, 찰파상, 검에 의한 상처, 심지어는 골절의 경우에도 별 다른 주의가 기울여지지 않았다. 게다가 이들은 일을 쉬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며, 현재 남아 있는 많은 규정들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시간은 좀 더 머무르려고 하거나 정해진 시간 외에 방문하고자 하는 장교들 때문에 지켜지지 않기 일쑤였다. 그녀들은 다음 병사가 들어올 때까지 몸을 씻을 시간을 내기도 힘든 날이 많았다.

36. 음식과 의복은 군대가 지급했으나 몇몇 “위안부”들은 오랜 기간 음식이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거의 모든 경우 이들은 보수를 받기로 되어 있었고 실질적인 돈 대신 전표를 모았으나,

전쟁이 끝난 당시 극히 소수만이 “임금”을 손에 쥘 수 있었다. 전쟁이 끝나면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저축되어 있던 돈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얻을 수 있었던 다소나마의 위안도, 일본군이 퇴각해 버리고 나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37. 많은 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증언에는 성적 학대에서 오는 뿌리깊고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와 함께 노예상태와 다름없는 가혹하고도 야만스러운 환경이 드러나고 있다. 그들에게는 개인적 자유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으며, 병사들에게서는 잔인한 폭력을, 위안소 운영자나 군의관들로부터는 냉대를 겪어야만 했다. 또한 자주 전방 근처에 가 있음으로 해서 적군의 공격이나 폭격, 죽음의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환경은 위안소를 자주 찾는 병사들을 더욱 주문이 많고 공격적인 성향으로 만들었다.

38. 게다가 그들은 질병과 임신의 공포에 지속적으로 시달렸다. 실제로 대다수의 “위안부”가 몇 차례씩 성병에 감염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동안 회복을 위해 얼마간 일을 쉴 수 있었으나 이 이외의 모든 경우, 심지어는 생리기간 중에도 “일”을 계속하도록 강요되었다. 한 피해자가 본인에게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군 성노예로 있던 시절 여러차례 성병에 걸렸던 탓으로 종전 후 정신장애아인 아들이 태어나게 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피해자들 마음 속 깊숙히 자리잡고 있는 수치심은 자살, 혹은 실패할 경우 죽음이 확실시 되는 탈출의 시도로 종종 그 결과가 나타나곤 하였다.

39. 사료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과 동경을 방문한 본인은 역사학자들을 만나 위안소가 생겨나게 된 배경과, 군 성노예로 보내어지기 위한 여성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징집되었는가에 대한 정보를 구하였다.

40. 본인은 동경 千葉대학의 하타 이쿠히코(秦郁彦) 역사학교수가 “위안부” 문제를 다룬 역사학 연구, 그 중에서도 특히 제주도에서의 비참했던 “위안부” 실태를 기술했던 요시다 세이지의 저서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는 점을 주목했다. 하타 교수에 따르면, 그가 1991/92년에 증거를 찾기 위해 한국의 제주도를 방문하고 나서 내린 결론은 “위안부 범죄”的 주범이 실제로는 한국인 마을 이장, 포주, 심지어는 징집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던 소녀들의 부모라는 것이었다. 하타 교수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1937년에서 1945년에 걸쳐 한국인 여성들에 대해 실시된 위안부 징집체제의 두 가지 전형을 제시하였다. 두 가지 모델 모두 부모나 마을 이장, 한국인 브로커 등 민간인들이 일본군을 위한 성노예로 종사할 여성들을 모집해 가는 데 도움을 준 협력자들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다. 하타 교수는 또한 대부분의 “위안부”가 일반병사의 급료(15-20엔)보다 많게는 110배나 더 많은 보수(1,000-2,000엔)를 받기로 일 본군과 계약을 맺고 그 돈을 받은 것으로 믿고 있었다.

41. 본인은 또한 동경 中央대학의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역사학 교수와도 만났는데, 그는 한국인 “위안부” 징집 명령 및 규칙제정이 일본 군당국에 의해서 혹은 군당국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일본제국 육군의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그는 또한 자료에 대해 심도있게 분석하고 있는데 그의 주장에 따르면, 사단이나 연대의 후방참모나 부관이 파견군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현병을 이용해서 점령지

역의 이장이나 유지들에게 명령하여 군 성노예로 봉사할 여성들을 징집 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었다는 것이다.

42. 위안소를 설치하는 데 있어 일본제국 육군이 관여했던 부분과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요시미교수는 다양한 문헌들을 참고하였다. 한 예로서 본인은 중국 광동에 주둔해 있던 일본 군 제21부대에서 발생한 1939년 4월 11일에서 21일까지의 <10일보고(旬報)>를 참조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군의 관리하에 장교와 병사들을 위한 종군 매춘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지역의 십만 병사들을 위해 대략 천명의 “위안부”가 일하고 있었다고 적고 있다. 본인이 입수한 이와 유사한 기타 자료들에서도 일본 육군성의 명령을 바탕으로 “위안소”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그 명령 이란 주로 성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규칙을 정하는 것과 같은 것들이었다.

43. 본인은 성노예 모집의 또 다른 보편적 방법으로, 파견군으로부터 업자가 파견되어 그들이 현병대나 경찰의 협조와 지지하에 군 성노예로 부릴 한국인 여성을 징집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이들 업자들은 대개는 군사령부에서 임명하지만 사단이나 여단, 혹은 연대에서 바로 임명하는 수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요시미 교수는 또한 징집에 관련된 상세한 자료수집이 매우 어려웠음을 토로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공식문서들이 일본정부에 의해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그 자료들은 방위청, 법무성, 노동성, 후생성, 그리고 대장성의 문서보관소에 계속 보관중인 것으로 보인다.

44. 이상에서 살펴본대로, 본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50주년이 되는 1995년에 진상조사 임무를 맡게 된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며, 이 작업이 군 성노예와 관련한 미해결 문제들을 정리함과 동시에, 폭력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생존 피해자들의 고통을 잠재워 주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믿는다.

III. 특별보고관의 활동 및 작업방법

45. 특별보고관 본인은 정부 및 비정부기구의 정보원으로부터 2차대전 중 아시아 지역에서의 군 성노예 문제에 관해 피해자 당사자들의 증언기록을 포함한 방대한 정보 및 자료를 얻었으며, 진상조사 작업에 앞서 이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하였다. 이 작업의 주된 목적은 본인에게 이미 주어진 정보를 검증하고, 모든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하며, 이와 같은 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고, 국가적·국제적 차원에서 현재의 여성학대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권고사항은 본인이 방문했던 국가들에서 직면하고 있는 특수상황에 국한되는 것일 수도 있고, 범세계적 차원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보다 보편적인 성격의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46. 본인은 임무를 수행하면서 특히 과거 “위안부” 여성들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는 데 주력했고, 일본정부가 이 사안의 해결책으로 어떠한 구제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47. 평양(1995년 7월 15일-18일). 인권센터 대표단은 김영남 외교부 부장의 영접을 받았다. 이들 대표단은 최고인민회의 의원, 외교부의 고위관리, 비정부기구의 대표, 학계 그리고 보도기관들로부터 본인의 임무에 사용될 정보자료를 제공받았다. 대표단은 또한 4명의 과거 군 성노예들의 증언을 청취하기도 하였다.

48. 서울(1995년 7월 18일-22일). 본인은 한국 방문 중에 공로명 외무장관의 영접을 받았다. 이 밖에도 외무부·제2정무장관실·법무부·보건복지부의 고위관리들, 학계 인사들, 국회의원 및 다양한 비정부기구들의 대표자들을 만났다. 본인은 또한 13명의 “위안부” 출신 여성들을 만나, 이들 폭력의 피해자 가운데 9명으로부터 증언을 들었다.

49. 동경(1995년 7월 22일-27일). 본인은 일본 방문 중에 총리실에서 이 가라시 고조 당시 관방장관과 내각 자문위원실·외무성·법무성의 고위 관리 및 국회의원들을 만났다. 또한 본인은 민간기구 및 여성단체 대표들도 만났다. 그 밖에 과거 일본제국 육군 병사였던 일본인과, 일본에 거주하는 “위안부” 출신 한국인 여성 각 한 명씩의 증언을 들었다.

50. 본인이 임무수행 중 접했던 주요인물의 명단은 본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다(역주: 앞서 밝힌대로 부록은 번역에서 제외됨).

51. 이 보고서는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앞으로의 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본 문제와 관련 있는 모든 당사자 즉, 북한 정부,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일본 정부의 견해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갖는 더욱 중요한 목적은 과거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위안부”로 일했던 모든 희생자들을 대변하는, 본인이 만났던 폭력의 희생물이었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려주려는 데 있다. 이들의 증언은 50년 전에 그들에게 자행되었던 잔혹행위에 대한 사과와 함께 그들의 존엄성의 회복을 요구하고 있는 모든 생존 피해자들의 목소리인 것이다.

IV. 증언

52. 본인은 자신들의 생애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되살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갖고 증언에 임해 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바이다. 엄청난 감정적 중압감에서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해 준 이 여성들과의 면담에서 본인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53. 본인은 보고서 분량의 제약 때문에 3개국에서 청취한 16건의 증언 가운데 몇 건만을 요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본인은 그들의 증언 덕분에 당시의 지배적 상황을 그려볼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다음의 증언들은 군 성노예 사건의 다양한 측면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선정된 것들이다. 본인은 이 증언들을 통해 군 성노예제도가 일본제국 육군 지도자들에 의해,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가운데 조직적이고도 강제적 수법으로 시행되어졌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

54. 현재 74세인 정옥순의 증언은 특히 일본제국 육군병사들에 의해 날마다 가해지던 강간 및 성폭행 이외에도 그들이 감내해야 했던 가혹한 처우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나는 1920년 12월 28일 북한의 함경남도 풍산군 파발리에서 태어났다.

내 나이 13세 되던 어느 해 6월, 들에 일나간 부모님의 점심을 지어야 했던 나는 물을 길러 마을 우물로 갔다. 그 곳에서 한 일본 수비대 병사가 갑자기 나타나 나를 끌고 가버려 내 부모님은 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다. 트럭에 실려 경찰서로 옮겨진 나는 그 곳에서 몇 명의 경찰관에게 강간당하였다. 내가 소리치자 그들은 내 입에 양말을 집어넣으며 강간을 계속했다. 내가 울자 경찰서장은 내 왼쪽 눈을 때렸고 그날 이후로 왼쪽 눈의 시력을 잃고 말았다.

10여일 후에 나는 혜산시에 있는 일본군 수비부대로 끌려 갔다. 그 곳에는 나와 같은 한국 소녀가 400명 정도 있었으며, 우리들은 5천명이 넘는 일본군 병사들의 성노예—하루에 40명까지 상대해야 하는—가 되어야 했다. 내가 반항할 때마다 그들은 나를 때렸으며 입 안에 넝마를 집어 넣기도 하였다. 한 명은 내가 복종할 때까지 음부에 성냥개비를 집어 넣어 하혈을 하기도 하였다.

한 번은 우리와 함께 있던 한 한국 소녀가, 어째서 하루에 40명씩이나 상대해야 하느냐고 대들자 그녀의 이러한 당돌한 행위를 벌하기 위해 일본군 중대장 아마모토는 그녀를 칼로 쳐 죽이도록 명했다. 그녀는 우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옷이 벗겨지고 팔 다리가 묶인 채 못이 박힌 판자 위에 굴려졌다. 이 형벌은 못들이 피에 젖고 살점이 묻어날 때까지 계속되었고 결국 그녀는 목이 잘렸다. 또 다른 일본인 아마모토는 ‘너희들 모두를 죽이는 것은 개를 죽이는 것보다 쉽다’고 말하고 ‘한국 여자들이 밥을 안준다고 울어대니 사람고기를 끓여서 그것을 먹이도록 하라’고 까지 하였다.

한 소녀가 빈번한 강간으로 인하여 성병에 걸리자 50명이 넘는 일본 군 병사에게 전염이 되었다. 병의 확산을 막고 그 한국 소녀를 ‘소독’하기 위하여 그들은 뜨거운 쇠막대기를 그녀의 음부에 갖다 댄 일도 있었다.

하루는 그들이 우리들 중 40명을 트럭에 싣고 멀리 떨어져 있는 뱃과 물이 가득한 웅덩이로 끌고 가서는 소녀들 중 몇몇을 구타한 후 그녀들을 웅덩이에 밀어 넣고 흙을 퍼부어 산 채로 매장하였다.

내 생각에는 그 병영에 있던 소녀들 중 절반 이상이 피살된 것으로 보인다. 나는 두 번 탈출을 시도했었으나 두 번 다 며칠 후에 체포되었다. 우리에게는 더욱 심한 고문이 가해졌고 나는 머리를 하도 여러 차례 맞아서 아직도 그때의 상처가 흉터로 남아 있다. 그들은 또한 내 입술 안쪽, 가슴, 배 등 전신에 문신을 하였다. 기절했다가 깨어나보니 산기슭이었는데, 죽은 줄 알고 병사들이 버려놓고 간 모양이었다. 나 말고도 두 명이 더 있었지만 한 명은 죽고 오직 나와 국혜라고 불리우던 동료만이 살아났다. 그 산중에 살고 있던 50세 가량의 남자가 우리를 발견하고 옷가지와 먹을 것을 주었다. 그는 또한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나는 5년간의 일본군 성노예 생활 끝에 상처입고, 언어장애에, 임신도 못하는 불구의 18세 처녀가 되어 돌아왔다.”

55. 77세의 황소균의 증언에는 당시 그 많은 수의 여성들을 군 성노예로 유인했던 기만적 징집방법에 대한 증언이 포함되어 있다:

“나는 1918년 11월 28일, 막노동꾼의 둘째 딸로 태어났다. 우리 가족은 평양시 강동군 대리 노동자 구역에 살고 있었다.

1936년, 내가 17살 때 마을 대표가 우리 집에 와서는 공장 일자리를 얻도록 힘써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집안사정이 매우 어려웠던 나는

기쁜 마음으로 좋은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일자리 제의를 받아들였다. 나는 일본 트럭에 실려서 20여명의 다른 한국 소녀들이 기다리고 있는 기차역으로 갔다. 우리는 기차와 트럭을 번갈아 타고 며칠간 여행한 끝에 중국 목단강가에 있는 커다란 집에 도착했다. 나는 그 때 그곳이 공장인 줄 알았으나 알고 보니 그곳엔 공장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었다. 소녀들은 각각 문마다 번호가 매겨진 작은 방을 하나씩 배정받았는데, 거기엔 깔고 잘 가마니 밖에는 없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한 채 이틀이 지나자 군복에 검을 찬 일본군 병사 하나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내 말에 따를 것인지 아닌지’를 묻고는 머리채를 잡아 끌어 나를 바닥에 눕힌 다음에 다리를 벌리라고 명령했다. 그는 나를 강간했다. 그가 떠나고 난 후 나는 문밖에 20내지 30명의 군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은 모두 나를 강간했고, 그 날 이후 매일 밤 15명 내지 20명을 상대해야 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의료검진을 받아야 했다. 병에 걸린 것이 알려지면 사살되어 알지 못하는 장소에 매장되었다. 하루는 내 바로 옆방에 새로 들어온 소녀가 병사들에게 반항하며 그 중 한 명의 팔을 물었다. 마당으로 끌려 나온 그녀는 우리 모두가 보는 앞에서 목이 잘렸고 온 몸도 여러 조각으로 베어졌다.”

56. 한국의 (서울시) 영등포구 등촌동에 거주하는 73세의 황금주의 증언은 군대가 위안소를 운영하면서 어떤 규정을 적용했는지를 보여준다:

“내 나이 17살 때, 당시 마을의 일본인 지도자 부인이 모든 한국인 미혼여성들은 일본 군수공장으로 가서 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노동자로서 선발된 줄로 생각했다. 그 곳에서 3년간을 일하던 어느 날, 한 일본병사가 나를 그의 텐트로 오도록 명했다. 그는 내게 옷을 벗을 것을 요구했고 그 때까지 처녀의 몸이었던 나는 너무 두려워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내 치마를 찢어버리더니 자신이 지니고 있던 총검으로 속옷까지 벗겨버렸다. 바로 그 순간 나는 기절했고 깨어났을 때 내 몸은 담요로 덮여진 채 사방에 피가 묻어 있었다.

그 사건 이후로 나와 함께 그 곳에 있던 다른 모든 한국 소녀들이 그려하듯 처음 1년간은 고급 장교들에게 봉사하도록 명해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점점 ‘고물’이 되어가면 하급 장교를 상대하도록 했다. 만일 우리 중 누군가가 병에 걸리면 대개는 사라져 버렸다. 그들은 또한 우리에게 ‘606-주사’를 놓음으로써 임신이 안 되도록 하였고, 만일 임신이 된다 해도 유산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우리에게는 일년에 단 두 차례 의복이 제공되었으며, 음식은 오로지 떡과 물 뿐으로 그것마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다. 나는 한 번도 나의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아본 적이 없다. 나는 5년간을 ‘위안부’로서 일했으나 내 일생의 모든 고통은 그 경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나의 장은 잦은 감염으로 인해 대부분 제거되었고, 당시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경험으로 인해 다시는 성관계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심지어는 그들이 내게 강요했던 수 많은 더러운 짓들이 생각나 우유나 과일주스를 마실 때 조차도 구역질이 난다.”

57. 생존자 황소균은 성노예로 7년간 일본군에 억류되어 있다가 1943년 “위안소”에서 탈출하였다. 39세 되던 해 결혼을 할 수 있었으나 가족에

게 자신의 과거를 결코 말하지 않았다. 정신적, 육체적 상처 및 부인과 질병으로 인해 그녀는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

58. 생존자 황금주는 중국 길림성에 있던 위안소에서의 첫 날을 이렇게 회상하였다 : 한 일본병사가 그녀에게 다섯 가지 명령에 복종할 것을 명하면서 만일 지키지 못하면 죽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첫째는 황제의 명령이고, 둘째는 일본 정부의 명령, 셋째는 그녀가 배속되어 있는 중대, 넷째는 이 중대에 소속된 분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가 봉사하고 있는 이 천막의 주인인 그의 명령이었다. 또 다른 생존자인 한국의 김복순은 성노예 생활이 군대에 의해 직접 통제되었음을 증언하였다 : 매일 오후 3시에서 7시까지는 하사관급, 9시 이후에는 위관급 장교들을 상대하도록 정해져 있었으며, 성병으로부터 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위안부들에게 콘돔이 지급되었으나 대부분의 병사들은 사용하기를 거부하였다.

59. 이상의 진술은 성노예 제도가 일본 군사령부 및 정부의 명령으로 조직적 방법을 통하여 일본제국 군대에 의해서 개설되고 엄중히 통제되었다는 사실을 본인으로 하여금 믿게 해 준 정보들을 확인시켜 주었다.

60. 본인은 또한 이들 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 그들이 지난 상처의 흔적을 관찰할 수 있었다. 평양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돌보고 있는 조홍옥 박사에게 자문한 결과, 이들은 과거 수년간 매일 겪어야 했던 여러 차례의 강간으로 인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허약한 상태에서 여생을 보낸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조박사는 그녀들의 육체에 남아 있는 외형상의 상처 이외에 정신적 고통이 일생을 통해 그녀들을 괴롭히고 있으며, 이것이 훨씬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였다. 그녀는 또한 많은 생존자들이 수면부족, 악몽, 고혈압과 신경쇠약에 시달리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생존자 중 많은 여성들이 생식기관과 요로에 성병이 감염된 결과 불임수술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61. 본인은 증언을 청취하는 작업 이외에, 위안부 문제를 관련자 개개인에게 수용되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피해자들이 어떠한 배상방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이라는 방식의 해결책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국제사회, 그중에서도 특히 일본정부에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고자 했던 과거 “위안부”들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반영하고자 한다. 본인의 질문에 대한 거의 모든 “위안부” 피해자들의 대답에 의하면, 일본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a)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생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사과하여야 한다. 북한의 피해자들은 또한 일본이 북한정부를 통해 북한 국민 전체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한 반면에, 한국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사과편지가 보내져야 할 것이라 견해를 보였다. 아울러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무라야마(村山) 전 총리시절에 이루어졌던 사과 표명은 일본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했던 만큼 충분히 진지하지 못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b) 20만명 가까이 되는 한국 여성들을 군 성노예로 징집한 사실과, 일본제국 육군을 위한 위안소 설치작업이 정부와 군사령부가 숙지하고 있는 가운데 조직적이고도 강압적인 방법으로 수행되었다는 사실을 시인해야 한다.

(c) 성노예의 목적으로 여성들을 조직적으로 징집한 것은 인도주의적 국제법을 전면적으로 위반한 비인도적 범죄이자 반평화적 범죄이며, 노예제도 관련범죄 및 인신매매와 강제매춘 범죄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d)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도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e) 생존자에게 정부차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본정부는 일본 국내재판소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개개인의 배상요구가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2. 배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액수보다는 그것의 상징적 의미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본인에게 특정 액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63. 또한 많은 여성들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일본정부가 민간인들의 기부금으로 조성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기금」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일본정부가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64. 아울러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정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a) 일본내, 특히 정부의 공식문서보관소에 아직도 보관되어 있는 모든 관련자료의 발간을 포함해서 2차대전 중의 군 성노예 문제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활동.

(b) 조사활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 일본 역사 교과서 및 교육과정의 개정작업.

(c) 일본 국내법에 따라 군 성노예의 징집과 제도화에 관여했던 범법자들을 색출하여 기소하는 작업.

65. 본인은 피해자 모두가 한결같이 이 문제가 국제적 압력에 의해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유엔기구가 국제적 활동을 전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국제사법재판소나 상설국제중재재판소의 도움을 구하는 문제가 여러 차례 언급되었다.

V.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입장

66. 본인을 대신해서 인권센터의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이들의 방문 목적은 군 성노예를 위해 일본제국 육군이 한국인 여성을 징집한 데 대한 북한측 정부의 입장을 알아보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도함으로써, 그들의 입장 및 요구사항을 일본정부에 전달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67. 북한정부는, 국제법에 의거하여 일본정부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러한 법적 책임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더 이상 감추지 않고 청산하는” 의미에서 모든 행위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개개인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위안부” 제도 설치에 관여한 모든 인물의 신원을 파악하여 일본 국내법에 따라 기소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68.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의 근거에 대해 질문을 받은 평양 사회과학학회 법률연구소 소장 정남영 박사는 일본의 국제법상의 책임에 관한 북한 정부의 법 해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69. 우선, 20만명의 한국여성들을 종군 성노예로 강제징집했다는 것과, 그들이 겪은 심각한 성적 학대, 그리고 후에 그들 중 대부분을 사살한 점은 인도주의에 대한 범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게다가 일본의 한국합병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간주되고¹²⁾, 한반도에서의 일본인의 존재는 군사점령 상태에서 성립된 것이란 점을 감안할

때, 한국 여성은 “위안부”로 강제징집함은 피점령지역내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행해진 것이므로 이는 국제인도법상의 범죄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위안부”제도의 설치와, 특히 강제징집과 매춘강요는 일본이 1925년에 비준한 바 있는 1921년의 「여성 및 아동 매매금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70. 세번째로 “위안부” 문제에서 볼 수 있는 군 성노예제도는 1926년의 「노예협약」과도 명백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협약은 당시 국제관습법의 선언으로 간주되던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군 성노예제도가 1948년 이전에 조차도 국제관습법의 규정들로 수용되었음을 보여 주는 1948년의 「집단학살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따라 민족 집단학살 행위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란 견해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정남영 박사는 일본의 행위가 특정 국가, 민족, 인종 혹은 종교집단을 파멸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란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 협약의 제II조에 따르면, 집단구성원에게 정신적·육체적 해를 끼치고, 육체적 파멸을 가져오도록 그들의 삶의 조건에 고의로 악영향을 끼치며, 그들의 출산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 등은 집단학살에 해당 된다는 것이다.

71. 북한정부의 대표인사들은 일본과 대한민국간에 수립된 외교관계가 일본과 북한간에는 수립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위안부” 문제 외에도 양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강제노동 문제와 같은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으며, 북한정부는 이러한 사안들이 「샌프란시스코조약」 또는 전쟁 종결을 위한 기타 국제조약에 의해서 해결되었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72. 북한정부는 또한 일본 문서보관소에 보존되어 있는 모든 문서 및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자료들을 기초로 하여 “위안부” 설치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일본 역사교과서와 교과과정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73. 본인은 배상문제와 관련해서는 특정 액수가 지불되어야 한다는식의 구체적 제안을 들은 바가 없다. 그러나 외교부의 고위관료들은 몇 안되는 생존자들에 대한 개별적 배상과 함께, 일본침략에 의해 죽음을 당한 모든 이들을 위한 배상금 지불도 북한정부가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몇몇 관리들은 배상금 지급보다는 생존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과와 함께 북한정부에 대해 사과를 표하는 것 이 훨씬 중요한 상징적 가치를 지닐 것이란 점을 지적하였다.

74. 마지막으로 북한정부와 조사단이 방문기간중에 만났던 학계나 언론계 인사들과 피해자들은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며 이를 거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이 기금은 “국가적 차원의 보상을 회피하려는 술수”로 해석되어, 일본정부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이 기금을 설립한 것이라는 지적이 여러차례 제기되었다.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민간인들에게 협조를 구하여 이 기금을 설립한 것은 “피해국가”들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되는 만큼 이 기금의 조속한 철폐가 요구되고 있다.

75. 북한에서 이루어진 모든 인터뷰에서마다 본인과 유엔이 정부간의 중재자로서 일본정부에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도록 해 줄 것과, 국제

사법재판소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해 줄 것에 대한 강력한 희망이 표명되었다.

76. 결론적으로, 군 성노예 문제의 처리 및 그와 관련하여 일본정부에 전해지는 요구사항에 관한 한, 북한내의 모든 분야에서 거의 일치되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VI.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

77. 본인은 생존해 있는 피해자들로부터 증언을 듣고, 과거의 “위안부”들을 대신하여 적극적으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민간단체들과 “위안부” 문제의 가능한 처리방안에 대하여 의논하고, 아울러 대한민국정부가 이 사안에 대해 일본정부에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대한민국을 방문하였다.

78.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정부에 대해 취하고 있는 입장은 북한정부의 입장과는 달랐다. 왜냐하면 대한민국과 일본간에는 1965년의 조약을 통해 전쟁기간 중에 일본이 한국을 점령함으로써 야기됐던 문제들에 대한 청구권이 처리되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본인은 1965년의 조약은 단지 재산상의 청구를 규정했을 뿐, 인격적 피해상황을 규정하지는 않은 것이라 점을 주목하였다. 이에 본인은 한국정부의 관리에게 1965년의 조약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까지도 충분히 다루었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해 보았다. 공로명 당시 외무부 장관은 한·일 양국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1965년의 「한·일국교정상화조약」에 근거하여 전쟁기간중의 재산상 피해에 대해 일본정부가 배상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 당시에는 군 성노예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것이다. 1993년 3월, 이 문제에 관한 최초의 공식기사가 나온 후에 김영삼 대통령은 대한민국정부가 일본정부에 대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물질적 보상도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였다.

79. 일본의 법적 의무에 관한 한국정부의 입장에 관해서 법무부와 검찰

의 고위직 관리들은 일본정부가 50년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실질적으로 법적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와, 종전 당시 체결된 쌍무적 혹은 국제적 협약들이 “위안부”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지의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무척 힘든 일임을 본인에게 토로하였다. 그렇지만 배상을 얻어내는 방법으로 일본 국내 민사법원에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80. 이 점에 있어서 본인은 북한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대한민국정부에서는 어떠한 재정적 보상도 요구한 적이 없음을 알게 됐다. 그러나 본인은 한편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요구가 정부차원에서는 제기된 바 없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정부가 생존 피해자들의 권익수호 활동을 벌이고 있는 민간기구나 여성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였다. 이에 덧붙여 본인은 한국정부가 보건복지부를 통해 1993년 「생계지원법」을 마련하여 “위안부” 생존자들에 대해 의료 활동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생활비 지급,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으며, 이를 만족스럽게 여기고 있다.

81. 또한 본인은 대한민국정부가 “위안부” 제도와 관련된 모든 현존 서류 및 진상을 공개하도록 공식적인 요청을 해 왔다는 정보도 얻었다.

82. 또한 본인은 대한민국정부가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한 방법으로, 일본 총리가 모든 생존 피해자들 개개인에게 편지를 보내는 형태의 일본정부에 의한 공식적인 공개 사과를 요청하기도 하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83.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설립에 대한 대한민국정부의 입장과 관련하여 외무부장관은 이 기금이 한국 및 피해자들의 바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일본정부의 진지한 노력으로 보여진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기금을 반대하는 민간단체들의 활동을 지지하였고 그들의 요구가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84. 본인은 한국 방문중에 그 곳 정부의 조심스러운 입장과는 대조적으로 정계, 학계, 민간기구들의 대표, 그리고 피해자 자신들과 같은 사회의 각 계층의 인사들은 훨씬 강력한 요구조건을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었다.

85. 국회의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국회의원들과 기타 의회관련 학자들은 일본정부에 대해 과거에 일본이 군 성노예와 관련하여 저지른 전시 범죄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과, 그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정부차원에서 요청하도록 국회 외무위원회에서 정부에 권고한 바 있음을 본인에게 알려 주었다. 아울러 역사교과서의 개정과 모든 피해자들을 위한 기념비 건립도 요청되었다.

86. 본인은 또한 “위안부” 문제를 위해 일하고 있는 민간기구와 여성단체 대표들을 여럿 만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특히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는 본인에게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87. 이들 민간기구들이 취하고 있는 입장은 생존 피해자들 자신의 요구를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본정부가 공식사과 할 것,

“과거의 위안부 여성 모두의 명예와 존엄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전쟁 중의 범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을 인정할 것, 이 문제와 관련된 모든 문서 및 자료를 공개할 것, 희생자 개개인에게 배상금을 지불할 것, 일본내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통하여 개별적 배상금 청구를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88. 본인은 한국의 민간단체 대표들에게도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물어보았다. 이들 역시 일본정부가 국가적 차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에서 민간기금을 끌어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무조건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있었다. 본인은 피해자 자신들이나 그들의 후원자들이 일본 국민 개개인이나 민간단체 구성원들로부터의 기금 조성을 배상문제에서 가장 난처한 문제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89. 한편 이들은 국제기구인 유엔이 국제사법재판소나 상설국제중재재판소 등을 통해 국제적 압력을 행사하여 이 문제를 적절히 해결해 줄 것을 여러차례 요구하였다.

90. 1995년 3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성노예로서의 “노동”에 대해 전혀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강제노동에 대한 책임을 근거로 국제노동기구의 통신기관에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보낸 사실은 흥미로웠다.

VII. 일본정부의 입장 - 법적 책임

91. 일반적으로 국제법상에서는 피해자의 권리와 범죄자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일이 드물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권리와 책임은 특히 국제인도법 분야에서는 현대 국제법의 필수 구성요소이다.

92. 본인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정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는 과거의 ‘위안부’들과 그들을 대변하여 활동하는 국제 사회단체들로부터 제기된 특정 요구사항들에 대한 반론이 포함되어 있었다. 일본정부로서는 피해자들에 대해 단지 도의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 뿐 어떠한 법적 의무감도 느끼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본인은 2차대전 중에 군 성노예로 희생되었던 여성들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법적·도의적 책임 모두를 져야 한다고 믿는다.

93. 1994년 8월, 일본정부는 “당시 일본군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위안소의 설치 및 운영과 ‘위안부’의 이동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다.¹³⁾ 일본정부는 2차대전 중에 “위안부”를 징집하고 수송하였음을 인정하였으며, 또한 해당 여성들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이루어진 징집에 군 요원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도 시인하였다.¹⁴⁾ 일본정부는 또한 “그러한 행위는 많은 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성을 심각하게 해손시켰다”¹⁵⁾고 진술하고 있다.

94. 대한민국과 일본 방문시 민간단체 및 학계로부터 입수한 자료들을 살펴볼 때, 2차대전 중에 위안소의 설치, 그 시설의 이용 및 운영, 동

시에 동 시설의 감독과 규제에 대해서 일본제국 육군이 책임을 져야 함은 명백한 사실이다. 위안소와 관련하여 당시 육군 장교들이 명령을 내렸음을 보여주고 있는 상세한 기록이 입수되었다. 또한 위안부 징집 및 수송을 위한 일선 장교들의 특별요청이 들어 있는 명령서의 사본도 입수되었다.¹⁶⁾ 일본정부는 본인에게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던 “위안부” 관련 서류들이 완전히 공개되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95. 본인은 위안소에 억류되었던 여성들 거의 모두가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끌려왔고, 일본제국 육군이 방대한 네트워크를 지닌 위안소를 개설하고, 규칙을 정하고, 관리하고, 또한 일본정부가 위안소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덧붙여 일본정부는 자신들이 국제법상으로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준비를 해 두어야 할 것이다.

96. 일본정부는 1949년 8월 12일자의 「제네바협약」 및 기타 국제법 문서들이 2차대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구 유고슬라비아를 위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과 관련한 사무총장의 보고서 (S/25704)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일본정부가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사무총장의 견해로는 ‘법이 없이는 범죄도 없다(nullum crime sine lege)’라는 원칙의 적용이 특정조약에 대해서, 모든 국가들에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고 몇몇 국가들에게만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국제관습법의 일부인 국제인도법 규칙을 국제재판소에

서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본다...

국제관습법의 일부가 된 협약상의 국제인도법은 1949년 8월 12일의 「전쟁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네바협약」에 나타나 있듯이 무력분쟁에 적용시킬 수 있는 법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로는, 1907년 10월 18일의 「지상전 관련 법 및 관습에 관한 헤이그협약(IV)」과 그 부칙, 1948년 12월 9일의 「집단학살 방지 및 처벌 협약」, 그리고 1945년 8월 8일의 「국제군사재판소 조례」 등이 있다.”

97. 본인은 사무총장이 밝힌 견해와 마찬가지로, 국제인도법에 명시된 일정한 관점은 의심할 바 없이 국제관습법상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국가는 특정 조약의 가맹국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국제인도법 원칙을 위반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98. 제4차 「제네바협약」의 제27조에서 전쟁기간중에 발생하는 강간행위는 국제적 전쟁범죄라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다. 이 조항에는 “여성들은 자신들의 명예를 위협하는 어떠한 공격, 특히 강간, 강제매춘, 기타 모든 형태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1929년 발효되었으나 일본은 비준하지 않았던 「戰場 부상 예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여성들은 性에 따른 모든 배려가 따르는 처우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99. 「국제군사재판소 조례」의 제6조(c)항과 「동경재판소 조례」의 제5조는 살인, 집단학살, 노예화, 국외추방 및 기타 전쟁 전이나 전쟁

기간 중 민간인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비인도적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100. 이와 관련하여 국제법위원회가 제46회기 업무보고서에서 “위원회는 ‘국제관습법상에 전쟁범죄라는 범주가 존재한다’는 널리 수용되고 있는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 그 범주가 1949년의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행위 범주와 동일한 것은 아니나 이와 중복된다”고 지적하고 있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¹⁷⁾

101. 1949년의 「제네바협약」이 “시효원칙(ratione temporis)” 때문에 국제관습법으로 입증될 수 없다고 해도, 또한 일본이 가맹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1929년의 「제네바협약」을 적용시킬 수 없다 하더라도, 일본은 1907년의 「지상전 관련 법 및 관습에 관한 헤이그협약」과 그 부칙의 체약국(締約國)이었다. 만일 모든 교전국들이 그 협약의 체약국이 아니라면 그 규정(제2조)이 적용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 조항들은 당시에 운용되던 국제관습법의 명백한 실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헤이그 규칙」 제46조는 가족의 명예와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각국에 부여하고 있다. 여기서 가족의 명예란 가족성원 중 여성이 강간이라는 수치스러운 일을 겪지 않도록 할 권리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102. 일본은 1904년의 「강제매춘 금지에 관한 국제협정」 및 1910년의 「강제매춘 금지에 관한 국제협약」, 그리고 1921년의 「여성 및 아동 매매 금지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1921년 협약의 제14조에 따른 특권을 행사하면서 한국은 그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

된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것은 곧 한국인이 아닌 “위안부” 여성들은 일본이 이 협정상의 의무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법률가위원회¹⁸⁾에서는 많은 사례에서 그래왔듯이 일단 한국여성들이 한반도에서 일본땅으로 연행되어 간 경우라면 협약을 그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이는 여러 경우, 심지어는 한국여성들에 관해서도, 일본이 이 협약상의 국제적 의무사항들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또한 이 협약을 당시에 인정되던 국제관습법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103. 일본정부는 본인에게 제공한 문서에서 만일 국제법상으로 어떠한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배상·청구권의 처리를 다루었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기타 쌍무 평화조약 및 국제협정들에서 처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⁹⁾ 일본정부는 전술한 협정들과 관련하여, 자국은 주어진 의무를 성의껏 완수했으며, 배상 및 청구권과 관련한 모든 문제들은 일본과 위에서 언급한 협정 체약국간에 이미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04. 또한 일본정부는,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과 대한민국간의 협정(1965)」²⁰⁾의 제2조제(1)항에 따라 “양 체약국과 국민들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관련된 문제는...완전히 그 리고 최종적으로 정리되었다”고 본인에게 제공한 자료들에서 주장하고 있다. 또한 同 조약 제2조제(3)항에서는 “양 체약국 중 한 국가와 그 국민들의 재산, 권리 및 이익이 다른 체약국의 관할권내에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주장도 제기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실제로 일본정부는 총 5억달러를 지불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105. 근본적으로 일본정부는 모든 청구권은 이미 쌍방간의 조약에 의거하여 해결되었으므로 일본이 피해자 개개인에게 보상금을 지불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106. 일본정부는 또한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제14조 (a) 항을 지적한다. 여기에는 “일본은 동맹국들에게 전쟁중 일본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및 고통에 대해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본이 생존가능한 경제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가정할 때, 현재 일본의 자원은 일본이 앞에서 언급한 모든 손해 및 고통에 대해 완전한 보상을 하고 동시에 기타 채무를 이행할 만큼 여유 있지 못하다는 것도 인정된다...”고 적혀 있다.

107. 국제법률가위원회는 1994년 발간한 “위안부”관련 보고서²¹⁾에서, 일본정부는 자국이 연관되어 있는 어떠한 조약에서도 비인도적 대우의 피해자들이 개인 자격으로 제기하고 있는 배상요구를 수용하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클레임”이란 용어가 불법행위에 의한 청구권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합의 의사록 또는 부속 의정서에서도 이 용어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동 위원회는 비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로 인해 야기되는 개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협상이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주장한다. 동 위원회는 또한 한국의 경우와 관련, 1965년의 한·일간의 조약은 한국정부에 대한 배상에 관련된 것이지 피해자 개개인이 받은 고통에 대한 청구권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108. 본인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나 그 어떤 쌍무적 조약들도 일반적 의미의 인권침해나 특히 군 성노예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고 있다고 본다. 조약 당사자들은 “위안부” 문제로 야기된 특별요구를 협약에서 다루려고 의도한 적이 없으며, 그 결과 조약들 속에서도 일본에 의해 발생한 전쟁 행위 가운데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는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인이 내린 결론은 어떠한 조약도 군 성노예들에 의해 제기된 배상요구를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과, 따라서 일본정부는 여전히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데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이다.

109. 일본정부가 본인에게 제공한 자료에는 국제법의 관습이론에 따라 원칙적으로 국가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바로 국제법인 만큼, 특정 조약의 형식으로 약속된 것이 아니라면 개인은 국제법상의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 나타나 있다.

110. 본인의 견해로는 국제법에 의해 인정된 개인 권리의 예로서 국제 인권문서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유엔현장」의 제1조에는 유엔의 여러 목적 가운데 하나인 “인권 및 기본 자유에 대한 존중을 장려하는” 데 있어 협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시민권 및 정치권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마찬가지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개인의 권리를 정의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문서들은 개인도 국제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국제법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11. 일본정부는 또한 범죄자를 기소하고 처벌하는 국제법상의 의무를 논의하는 국제인권단체들에 대해 관심을 표명해 왔다. 이것은 국가의 일반적 의무가 아니라고 이해되고 있으며, 처벌 여부 역시 실체법적 문제로 인정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2차대전 이후 뉴렌베르크 재판소와 동경제판소도 전범들에 대한 일반적 사면조치를 베풀지 않았다. 이처럼 전쟁중의 범죄로 인해 개인을 기소하는 것이 국제법상 아직도 가능하다.

112. 한편, 군의 구성원들은 적법한 명령에 대해서만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비록 명령에 의해 그들이 전쟁규칙과 국제인도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그런 이유로 그들이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113. 위에서 언급한대로 비인도적 범죄란 살인, 집단학살, 노예화, 추방 및 기타 전쟁 이전이나 전쟁 중에 저질러진 비인도적 행위들로 정의되어 왔다. “위안부”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부녀자와 소녀를 대상으로 자행된 조직적인 강간행위와 유괴행위는 명백하게 민간인을 대상으로 행해진 비인도적 행위이며, 따라서 비인도적 범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위안소를 설치하고 운영한 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기소를 시작하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은 일본정부의 의무이다. 시간의 경과와 자료빈곤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가능한 한 기소를 시도해야 하는 것이 정부로서 해야 할 의무일 것이다.

114. 개인은 국제법상 어떠한 권리도 갖지 못하고, 따라서 국제법상 배상받을 권리가 없으며, 오직 국가간에만 어떤 형식으로든지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본정부의 입장이다.